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AA6블록) 공공분양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	비규제지역	없음	3년(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2.01.04 기준)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1.12.17(금)	24.09.27(금)	24.10.10(목)	24.10.18(금)	24.10.23(수)	24.10.25(금)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주택전시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완료 공동주택으로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별도로 선택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7.(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160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1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91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0.10(목)	2024.10.18(금)	2024.10.23(수)	2024.10.25(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01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e편한세상 검

단 어반센트로 기당첨자 및 부적격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전매제한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01.04)로부터 3년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 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해 거주 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01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5층 13개동 총 822세대 중 잔여 4세대
- 입주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월)까지(준공완료 주택으로 잔금납입 완료 후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원]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4-910160	01	059.9900A	59A	3	1403	205
					1406	1001
					1405	1101
	02	059.9800C	59C	1	1402	505
합 계				4	-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인)	층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2024.12.30
059.9900A	59A	1403동(5호)	2	1	341,200,000	34,120,000	307,080,000
		1405동(1호)	11	1	351,800,000	35,180,000	316,620,000
		1406동(1호)	10	1	351,800,000	35,180,000	316,620,000
059.9800C	59C	1402동(5호)	5	1	344,000,000	34,400,000	309,6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키볼출)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승계 거부 시 계약불가)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계약에 수반되는 인지세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17.)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일정 공정 후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조건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및 잔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인)	동호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2024.12.31
059.9900A	59A	1403동 (5호)	1043동 205호	발코니 확장	6,528,000	652,800	5,875,200
				삼성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오브제컬렉션 냉장고(빌트인타입) (BC4S1AA1(G))+오브제컬렉션 김 치냉장고(BC3K1AA1(G))+팬트리장 SK매직)보더리스 인덕션(IHR-BQ40E)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Gray) 주방 아일랜드장 침실1 파우더가구+드레스룸 엔지니어드스톤_주방상판+주방벽+작업대조명+아일랜드 상판 디자인 패널(거실창 주변+거실 1개면+복도 2개면) 복합 환풍기(욕실1+욕실2)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_거실 우물 직간접등+천장시트패널 침실조명 디밍제어시스템_디밍조명(침실2+침실3) 삼성)빌트인 식기세척기(DW50T4065SS) 8인용	26,210,000	2,621,000	23,589,000
		1405동 (1호)	1405동 1101호	발코니 확장	6,528,000	652,800	5,875,200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_거실 우물 직간접등+천장시트패널 LG)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SK매직)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ERA-BT03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Gray) 주방 아일랜드장 침실1 파우더가구+드레스룸 침실3 불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_주방상판+주방벽+작업대조명+아일랜드 상판	19,760,000	1,976,000	17,784,000

		1406동 (1호)	1406동 1001호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골든 플렉스(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디자인 패널(거실창 주변+거실 1개면+복도 2개면) 복합 환풍기(욕실1+욕실2)			
				발코니 확장	6,528,000	652,800	5,875,200
				삼성)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Gray) 복합 환풍기(욕실1+욕실2)	8,500,000	850,000	7,650,000
059.9800C	59C	1402동 (5호)	1402동 505호	발코니 확장	6,979,000	697,900	6,281,100
				삼성)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SK매직)보더리스 인덕션(IHR-BQ40E)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Gray) 침실1 파우더가구+드레스룸 침실2 붙박이장 엔지니어드스톤_주방상판+주방벽+작업대조명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골든 플렉스(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디자인 패널(거실창 주변+거실 1개면+복도 2개면)_침실3 드레스룸 미선택시 비데일체형 양변기(욕실1+욕실2) 복합 환풍기(욕실1+욕실2)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_거실 우물 직간접등+천장시트패널 침실조명 디밍제어시스템_디밍조명(침실2+침실3) 삼성)빌트인 식기세척기(DW50T4065SS) 8인용	21,630,000	2,163,000	19,467,000

※ 본 아파트는 준공완료 공동주택으로 청약자는 계약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별도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자는 위 동호수별 해당 품목에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청약 전에 확인 및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계약조건을 승계하여 공급계약 체결, 기존 계약조건 미 승계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계약금 및 잔금)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계약금 및 잔금)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702홍길동')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납부자 중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IV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p> <p>-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p> <p>*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p> <p>-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p> <p>*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당첨자 발표 서비스</p>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18.(금) ~ 2024.10.27.(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0.1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본인	• 당사 비치(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모집공고일[2024.09.2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4.10.25.(금) 10:00~16:3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수입인지(인지세)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모집공고일[2024.09.2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정당 계약자의 계약 체결일 이후 예비 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잔여세대 발생 시 선순번부터 안내 예정이며, 선순번 계약 완료 시 후순번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4.10.27(일) 별도 공지한 시간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4.10.27(일)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Ⅶ 참고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첨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p>■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12.17.(금))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p>■ 사업주체 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01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p> <p>■ 분양 문의 : 080-783-3000</p> <p>※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에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 분양 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p>	